
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
법률,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
운영에 관한 법률, 지방재정법, 지방회계법,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, 지방자치단체를
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
지방공기업법 등 8건의 법률에 대한
일부개정법률안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
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4조 등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
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최 기 도)